

양 곡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식 량 정 책 과)

1. 개정이유

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양곡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32호, 2026. 8. 27. 시행)됨에 따라, 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미곡수급관리시스템에 포함할 정보, 운영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3조의2 신설)
- 나.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사항,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3조의3 신설)
- 다.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결과 공표 조건 및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3조의4 신설)
- 라.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할 기능, 정보 입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3조의5 신설)
- 마. 농협등보관양곡에 대한 보고 주체 및 대상,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3조의6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미곡의 생산에 관련된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정보
2. 미곡의 수요에 관련된 국가데이터처의 양곡소비량 정보
3. 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관련 정보
4.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미곡의 가격 관련 정보
5. 그 밖에 미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완·개선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)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
2. 보관시설·장비 등 안전관리 실태
3. 보관 양곡의 품위 및 보관창고 등급
4.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점검 :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
2. 수시점검 :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

③ 보관시설 실태점검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4(실태점검 결과의 공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1.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2. 보관시설의 관리 상태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위치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부대비용의 범위) 「양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조의2(부대비용의 범위) ---- ----- ---- <u>제8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2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미곡의 생산에 관련된 재배 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정보</u> <u>2. 미곡의 수요에 관련된 국가 데이터처의 양곡소비량 정보</u> <u>3. 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관련 정보</u> <u>4.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미곡의 가격 관련 정보</u> <u>5. 그 밖에 미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</u>

부 칙

2. 보관시설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상태
3.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보관시설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제3조의5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)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1. 정부관리양곡 취득·보관·가공·공급 현황 관리
2. 정부관리양곡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 및 분석
3.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
- ② 정부관리양곡의 취득·보관·가공·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- 제3조의6(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그 밖에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곡수급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완·개선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)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부관리양곡의 재고관리 현황
2. 보관시설·장비 등 안전관리 실태
3. 보관 양곡의 품위 및 보관창고 등급
4.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② 실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점검 :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
2. 수시점검 :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

③ 보관시설 실태점검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4(실태점검 결과의 공표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1.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2. 보관시설의 관리 상태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위치
2. 보관시설의 안전 및 품질 관

<신 설>

리 상태

3.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

4. 그 밖에 보관시설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3조의5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)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정부관리양곡 취득·보관·가공·공급 현황 관리

2. 정부관리양곡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 및 분석

3.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

② 정부관리양곡의 취득·보관·가공·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3조의6(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※ 부칙: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